

新물질 창출 기반약해 타격예상

물질특허 보호를 핵심으로 한 새 특허제도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물질특허란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특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단일물질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특허를 말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동일물질인 경우에는 생산방법 용도·출처·분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물질을 사용할수 있게 된다.

물질이라는 것은 수많은 물건의 원료가 되는 것이므로 물질특허권은 그 물질이 관련되는 모든 물건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현재까지 알려져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약500만개에 달한다고하며 연간 수십만개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합성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제 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은 연간 수십개정도에 불과하다.

화학공업중에서 물질특허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산업분야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동시에 기술집약산업인 농약, 의약품료 등 정밀화학공업이라 할 수 있다.

화학공업분야의 발명을 보호하는 화학 특허에는 물질특허 외에도 제법 특허, 용도특허, 의약특허, 조성물특허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법특허와 조성물 특허만 허용해왔다.

이번에 물질특허가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개발한 신물질을 이용할때는 반드시 기술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등신물질창출 기반이 취약한 국내업체는 그 부담이 클뿐아니라 충격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술개발 촉진의 전기로 삼아야

또 지금까지 공고일로 부터 12년으로 하되 출원일로 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던 특허기간을 공고일로 부터 15년으로 연장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특허기간 회복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특히 80년이후 미국에서 물질특허된 품목 (의약 · 농약) 으로서 7.1현재 시판되지 않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국내 약사법, 농약관리법에 의해 행정지도를 통해 보호하게 된다.

물질특허제도의 실시는 첨단기술개발을 촉진시킬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아직도 기술수준이 뒤떨어진 농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해볼때 모방제품의 생산 불가, 로열티 부담으로 인한 농약가격 상승, 외국 선진기업의 자본과 기술에 예속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가 없다.

농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술사용료 (로열티) 를 15% 지불할 경우 원제 가격은 25%, 제조원가는 17.8%가 인상되어 소비자 가격은 15%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7.1부터 이 제도가 실시 되어도 출원에서 공고 까지는 특성 시험 등을 위한 기간이 있기때문에 사실상의 추가부담은 90년대초 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물질특허 민간협의회등을 통해 관련업계의 건의를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물질특허 종합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은 민간기업의 투자능력을 감안 우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화학연구소에 활성시험센터, 국립보건원에 안전성 시험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90년까지 총 43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신물질 창출을 위한 기술 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